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04

발의연월일: 2021. 4. 12.

발 의 자:임오경·김민철·박상혁

박 정・박홍근・오영환

유정주 • 이규민 • 이수진

고용진 · 조오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의 2000년 이후 공연예술분야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화재, 출연자 및 스태프 등 추락·감전·충돌, 관객 심정지, 무대세트전도 등으로 인해 44명이 부상을 당하고 20명이 사망하는 등 총 64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.

또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공연 중 화재사고로 100억원이 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공연장의 물적피해 역시상당히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연예술분야의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·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(안 제3조제2 항제7호 신설). 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	제3조(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②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	
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	
하며,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	
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	
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	
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	
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	
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
	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과 같음)